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30일.....
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	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1997. 2. 2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7년 2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4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97.2.22)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홍기

가. 개정이유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음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 1일에 가산(안 제18조제3항)

○ 오전, 오후 반일 단위 허가(안 제20조제3항)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안 제22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 안 제13조제1항 및 안 제14조의2 규정은 토요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동 조례에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규정함.

○ 안 제18조의 개정내용은 현행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함.

○ 안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여 연가를 오전, 오후의 반일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여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함.

○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2조제3항의 내용은 지참, 조퇴 및 외출시간의 누계가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복무자세를 유도하고자 동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병가·조퇴·외출 등 직원의 복무상황을 일일이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는 데, 실제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 답변요지(홍기 총무과장) :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효율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
----------	-----

제안년월일 : 1997. 2.

제안자 : 마포구청장

1. 提案理由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과 67500-1311(96.9.24)호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 사업장생활계획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현행 『가정용』과 『사업장용』규격봉투를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규격봉투 종류 및 용량을 정하며 『생활폐기물용』의 판매가격은 기존의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고, 『사업장폐기물용』의 판매가격은 현행 자가신고다량의 반입수수를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보완 추진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관급규격봉투 판매가격 조정(안 제18조 관련 별표 2)
- 관급규격봉투 종류 조정(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관련 용어조정(안 제23조제1항)
- 대행폐기물처리업자 부담 반입처리비 일부 구청부담 신설(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3. 關係法令

- 폐기물관리법(1995.8.4. 법률 제4970호) 제2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4. 參考事項

- 예산조치: 추경반영 등 별도조치 필요함.
-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획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미만 배출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 사업장배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봉투에 담는다.
-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① 구청장 또는 동장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봉투, 사업장폐기물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대행지역 내의 무단투기 폐기물, 감면대상자 배출 폐기물, 공공장소 청소로 배출된 폐기물을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한 경우에 그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할 반입처리비를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급규격봉투 판매가격 적용시점은 이와 관련한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공포후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제18조 관련)

<일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 원)

구 분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5 ℓ	90	-
10 ℓ	170	-
20 ℓ	350	-
30 ℓ	510	-
50 ℓ	850	1,020
75 ℓ	1,300	1,520
100 ℓ	1,750	2,040

<특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 원)

구 분	특수규격봉투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겸용)
50 ℓ	1,80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생략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일반규격가정용봉투에 제2조 제4호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일반규격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23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중 가정용 봉투·사업장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제18조 관련)
 (일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 원)

구 분	가정용	사업장용
5 l	90	-
10 l	170	-
20 l	340	360
30 l	490	530
50 l	820	880
75 l	-	1,300
100 l	-	1,750

개 정 안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미만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용폐기물용
 ③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제23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생활폐기물용봉투·사업장용폐기물용봉투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대행지역 내의 무단투기 폐기물, 감면대상자 배출 폐기물, 공공장소 청소로 배출된 폐기물을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한 경우에 그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부담할 반입처리비를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⑥ (신설)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제18조 관련)
 (일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 원)

구 분	생활폐기물용	사업장폐기물용
5 l	90	-
10 l	170	-
20 l	350	-
30 l	510	-
50 l	850	1,020
75 l	1,300	1,520
100 l	1,750	2,040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특수규격봉투의 가격〉			〈특수규격봉투의 가격〉	
(단위: 원)			(단위: 원)	
구분	가정용	사업장용	구분	특수규격봉투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겸용)
50ℓ	1,800	1,800	50ℓ	1,800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7. 2. 20
시민보건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7. 2. 1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97. 2. 14

다. 상정일자: 제4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7. 2. 20)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평신 청소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과 67500-1311(96.9.24)호의 사업장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량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현행 “가정용”과 “사업장용”규격봉투를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규격봉투 종류 및 용량을 정하며 “생활폐기물용”의 판매가격은 기존의 가정용과 사업장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고, “사업장폐기물용”의 판매가격은 현행 자가신고다량의 반입수수료를 반영하여 판매가격을 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보완 추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판급규격봉투 판매가격 조정(안 제18조 관련 별표 2)
- 판급규격봉투 종류 조정(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관련 용어조정(안 제23조제1항)
- 대행폐기물처리업자 부담 반입처리비 일부 구청부담 신설(안 제35조제5항 및 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가정용과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을 정하고,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수료종량제를 적극 시행하여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적극 유도하며, 판급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중 규격봉투의 가격조정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가정용과 사업장용 봉투의 평균가격으로 조정하고,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는 가정용과 사업장용 봉투의 평균가격으로 조정하고, 사업장폐기물용 봉투는 기존 일반규격사업장용 봉투가격에 수도권매립지의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중 자가신고다량의 반입수수료와 가정계 반입수수료의 차액을 봉투가격에 반영하여 조정함.

그러나 '96. 11. 1.자로 29.4%인상된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은 '97년초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생활폐기물 107%, 사업장폐기물(신고다량) 39% 인상됨으로써 우리구의 일반규격봉투의 가격은 평균 13%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대책과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봉투가격 인상을 자제하였으나 적정한 시기에 봉투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대행구역의 확대 등 청소행정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 봉투가격 인상분을 흡수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김포매립지 반입 처리비가 107% 인상되었는데 규격봉투가 격 인상으로 대차대조가 되는가?
-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 매립지 인상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음. 정책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사항임.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매립지 인상분을 감량으로 줄여보겠는가?
- 답변요지(이평신 청소과장) : 추경에 반영해야될 사항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67
----------	-----

제안년월일 : 1997. 1.

제안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 각 자치구별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토록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를 조직(본부장 : 구청장)함. (안 제2조)

나.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때 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해기간을 정하여 관련 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6조)

라.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해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 제15조
- 자연재해대책법(1996. 8. 8 법률 제5153) 제8조,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예산 : 필요

다. 입법예고 : 1996.11. 7~11.26(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1996-286)

마로붙임 :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마포구재해대책본부(이하 "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조직) ①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원으로 구성하며,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재해별 해당국장(풍수해, 설해 : 건설국장, 지진 등 : 총무국장), 재해별 해당과장(풍수해 : 하수과장, 설해 : 토목과장, 지진 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의 기능) 재해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안의 재해응급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2. 지역민반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중앙재해대책본부 또는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